

제210회임사회

2003. 3. 14.

검 토 보 고 서

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3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5일

3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「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(2003. 2. 12)」에 따라
-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 개별법물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2001. 4. 28이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4. 심의사항

○ 청주의료원 — 3건, 121.20㎡

-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· 간호사 기숙사 | 증축 | 경량철골조 | 78.0㎡ | (27,950천원) |
| · 영안실 매점 | 증축 | 경량철골조 | 25.2㎡ | (12,499천원) |
| · 영안실 문상객실 | 증축 | 콘테이너 | 18.0㎡ | (4,774천원) |

○ 충주의료원 — 2건, 598.33㎡

- 가동(3층) 회의실 중축 경량철골조 205.39㎡ (82,534천원)
- 가동(2층) 입원실 중축 철골콘크리트 392.94㎡ (244,141천원)

5. 검토의견

○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검토한 바

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,

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,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,

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사용하면서 회계처리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타도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어,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(대통령령 제16983호, 2000.10.20)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8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동의한바 있어,

그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다만, 공유재산의 증축 준공 후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

의회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

2001. 6. 28(청주의료원) 및 2002. 9. 6(충주의료원) 증축 후

지금에 와서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려는 사유와

청주의료원의 무상사용동의 건물(영안실 매점 및 문상객실)의

종류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지방공사의료원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